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89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임호선·문대림·전진숙

정준호 · 오세희 · 채현일

송재봉 • 이원택 • 이춘석

김주영 · 조계원 · 이종배

박덕흠 • 엄태영 • 이연희

이강일 · 이광희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훈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처럼 서훈이 확정된 후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역사적 평가 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 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적심사를"을 "제8조의3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서훈의 변경) ① 서훈의 확정 이후에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훈을 변경할수 있다.
 - ② 서훈 추천권자는 제1항에 따라 서훈의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3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훈의 변경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서훈의 변경에 관한 의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훈의 변경이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에 수여된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고, 새로 결정된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발생하였을 때에는"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8조의3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7조 또는 제8조"를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로, "확정 또는 취소"를 각각 "확정, 변경 또는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에"를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로, "취소된"을 "변경 또는 취소된"으로,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을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서훈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에 수여받은 훈장 또는 포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의 추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서훈 변경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의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훈의 추천) ①・② (생	제5조(서훈의 추천)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	③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적심사</u>	제8조의3
를 거쳐야 한다.	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u>심사를</u> .
<u> <신 설></u>	제7조의2(서훈의 변경) ① 서훈의
	확정 이후에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
	지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
	는 등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공적을 다시 심의하여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달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서훈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서훈 추천권자는 제1항에
	따라 서훈의 변경을 하려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의3에 따른 공
	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에 관한 의안을 국
	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②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③ 서훈 추천권자는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 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 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서훈의 변경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서 훈의 변경에 관한 의안에 대하 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 훈의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서훈의 변경 이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에 수 여된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 을 환수하고, 새로 결정된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

(현행과 같음)

<u>(3)</u> -----

0					
					-
					_
<u>발생</u>	하였을	때에는	제8	조의3에	
따른	공적심	심사위원회	회의	심사를	-
<u> 거쳐</u> -					_
					-
					_
					_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 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서 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 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2(서훈의 공표) ① <u>제7조</u> <u>또는 제8조</u>에 따라 서훈이 <u>확</u> <u>정 또는 취소</u>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u>확정</u> <u>또는 취소</u>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의2(서훈의 공표) ① <u>제7조,</u>
<u>제7조의2 또는 제8조확</u>
<u>정, 변경 또는 취소</u>
<u>확정</u> ,
변경 또는 취소
②제7조의2
또는 제8조에변경 또는 취
<u>소된수여받은 훈장 및 포</u>
장(서훈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
전에 수여받은 훈장 또는 포장
을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 제8조의3(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훈 추천권 자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의 추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2. 서훈 변경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의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3.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적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일시·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